

조정 합의를 위한 추가 제안

2007.4.3. 당사자들이 또다시 회동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기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이용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 인증용 소프트웨어는 이미 오래 전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도 최근 자바 애플릿 형태의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확보하여 그 소스코드까지 완전히 공개하였습니다.
4. 그러나 신청인은 공인인증기관이 아니므로, 그가 확보한 인증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KISA의 심사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러한 심사나 확인을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코드사인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의 비밀키(private key)가 없으므로 그러한 코드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피신청인은 자신이 이미 개발을 완료한 범용적 가입자 설비 또는 신청인이 그 소스코드까지 공개한 범용적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5. 피신청인이 범용성 있는 가입자 설비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모든 웹서버들이 그 설비를 채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웹서버들이 그 설비를 채용하도록 피신청인이 독려하거나, 권유할 의무도 없다는 점, 그리고 웹서버들이 스스로 그 설비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추가 비용이나 유지 보수 업무는, 그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부담할 어떠한 법률상, 계약상 의무도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웹서버와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며, 서버측 소프트웨어(솔루션)의 유지, 보수를 지원할 어떠한 법률상의무도 없음을 확인하며, 이 점을 합의문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합의문(수정 초안) 내용 보충

6. 2007.4.2. 제출된 합의문(수정 초안)의 설명 부분 중, 제6조(위약벌)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하고자 합니다:

피신청인은 공인인증기관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지로, 전자금융공동망(계좌이체, 송금, 금융

거래정보 조회 등 서비스), 결제대행(Bankpay PG), 전자상거래 지급결제(BANK B2B) 등의 영리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는 기술적으로는 인증 및 전자서명과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정책적 이유로 공인인증서의 이용이 강제되고 있습니다(거래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피신청인은 이러한 결제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기술은 고객(인터넷 결제를 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야만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는 이미 고객이 어떤 운영체제/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결제 서비스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앞선 기술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결제 서비스” 기술이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 밖에는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인인증” 역무마저도 이 범위에서만 제공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공인인증 역무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기술적 열악함이 당장 표면화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이를 우려하여 공인인증 역무의 보편적 제공을 지금껏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 역무를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거나, 피신청인에게 기술지원 의무가 생겨나거나, 다른 어떠한 장애도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현 상황을 피신청인이 집요하게 유지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스스로 마련한 2006년 업무소개서¹ 제21면을 보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피신청인의 “2005년도 인터넷지로 처리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한해 동안 피신청인이 인터넷 지로로 처리한 결제 액수는 33조원이 넘고, 인터넷 계좌이체 등으로 피신청인이 처리한 결제 액수는 3900조원이 넘습니다. 이들 거래로부터 피신청인이 매년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려달라는 신청인의 거듭된 요청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대로 공인인증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범용성이 확보되었더라면,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의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제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이용자들로 하여금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사용하도록 공인인증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강제하려는 피신청인의 시도는 전자서명법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며, 온 나라의 전산환경을 특정 업체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막대한 국부 유출을 강요하고, 국가 전산체계 보안의 취약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위법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아니한 댓가로 지불되어야 할 위약벌 액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

1 http://210.103.193.153/kftc/do/FileDownloader/ko2006.PDF?n=4787&d=GD&f=ko2006.PDF&t=board_pds

려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4.13.

신청인

김기창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